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5. 11 선고 2021가단3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4. 20.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6. 29.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망고 묘목 500개를 공급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재와 같다.

제2조(물건의 인도)

2. 피고는 잔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목적 묘목을 원고에게 인도한다.

제3조(계약의 해제)

2. 쌍방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는 계약금을 포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20. 6. 30. 피고에게 망고 묘목 대금 3,500만 원(= 500개 × 1개 당 7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3. 피고에게 80만 원을 대여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와 답변서에는 망고 묘목 대금에 대하여 다투는 내용의 기재만 있을 뿐,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내용의 기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망고 묘목 대금을 지급받은 2020. 6. 30.경 원고에게 망고 묘목 500개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2020년 7월말 경까지 원고에게 이를 공급하지 못한 점(피고는 답변서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망고 묘목을 구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7. 29.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걸쳐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금 3,5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대금을 반환하여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만 보냈을

뿐, 이 사건 공급계약의 유지 여부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20. 7. 29. 무렵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망고 묘목 대금 상당액인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2020. 9. 3. 피고에게 8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반환으로 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후 망고 농사를 포기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망고 묘목을 공급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해제될 수 없거나 해제되더라도 원고에게 망고 묘목 대금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2)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망고 묘목을 공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는 답변서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망고 묘목을 구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7. 29.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걸쳐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금 3,5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대금을 반환하여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만 보냈을 뿐, 이 사건 공급계약의 유지 여부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80만 원(= 원상회복 3,500만 원 + 대여금 반환 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1.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편병호

1)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소 불분명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답변서만 제출되었는바, 피고는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선택한다.